

의안번호	제 935 호
의결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1년 12월 15일

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935
--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12월 15일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'22.1.13.시행)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
- 충청북도의회 의장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의장의 책무(안 제3조)

-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

○ 지원범위(안 제5조)

-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,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,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보강,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지원 기준 및 절차(안 제7조)

-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: 중증장애인공무원 대상
- 보조공학기기 등 제공: 장애인공무원

○ 지원방법(안 제8조)

-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지원사업은 직접 수행·제공하거나,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, 출자·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 가능

3. 조례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'21. 12. 6. ~ 12. 13.
- 관련부서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공무원”이란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중증장애인공무원”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근로지원인”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·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
4. “보조공학기기·장비”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,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.
5. “전문기관”이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의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의장의 책무) 충청북도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또는 작업

보조공학기기·장비(이하 "보조공학기기 등"이라 한다)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신청)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범위)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, 장애정도,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
2.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
3.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
4.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)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1.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
2.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

제7조(지원 기준 및 절차) 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,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,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지원방법)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·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) ① 의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와 지원 결정
 2.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
 3.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
 4.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
-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0조(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)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 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11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공무원법

- 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(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)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